

주정차위반차량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의거 단속된 주정차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부과)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위반사실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없음, 이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5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2019.11월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34저47**외 960건
3. 공 고 기 간 : 2019.12.15. ~ 2019.12.31.
4. 과태료 금액 안내
 -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금액의 20% 감경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과태료 금액 40,000원(자진납부시 3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 금액 80,000원(자진납부시 64,000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 과태료 금액 50,000원(자진납부시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 금액 90,000원(자진납부시 72,000원)
5. 상기공고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과 교통지도팀(☎ 668-3021~5, FAX 282-7158)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